

#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
발의자 : 김종희 · 이용주 · 최경환(평)

황주홍 · 유성엽 · 이찬열

조배숙 · 장병완 · 김수민

정동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은 남원군 왕치면을 남원읍에 편입하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, 「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」에 따라 남원읍이 남원시로 승격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(失效)된 상태임.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법률 제 호

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

법률 제392호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